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8-11

대 전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5구합10295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유케이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피 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변 론 종 결	2016. 5. 25.
판 결 선 고	2016. 7.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1,671,320원, 지방교육세 1,091,130원, 농어촌특별세 507,56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8-11

가. 원고는 2011. 6. 8.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5. 2. 대전 서구 A아파트 8동 2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경매로 취득한 후 2012. 5. 1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38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취득세 50%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7,600,000원, 지방교육세 760,000원, 농어촌특별세 380,000원을 신고하였고, 2012. 5. 15. 이를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5. 6. 10.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에서 감면대상으로 정한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의 취득이 아닌 제3자인 B로부터의 취득이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득세 11,671,320원, 지방교육세 1,091,130원, 농어촌특별세 507,56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지방세를 징수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그 지방세의 과세연도 · 세목 · 세액 및 그 산출근거 ·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고지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근거규정으로 지방세법만을 제시하고 있고 농어촌특별세법은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취득세의 과세표준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지방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8-11

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본세와 가산세를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하며, 가산세의 종류, 세액, 산출근거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적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5호, 제55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6조 제1호, 제2호 본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의 납세고지는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연도와 세목,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자의 주소·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취하여지는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에 대한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규정들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신중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는 만큼, 납세고지서에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대상 재산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세액 및 과세표준액, 적용할 세율 등 세액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위 규정들은 강행규정으로서 위 규정들에서 요구하는 사항 중 일부를 누락시킨 하자가 있는 경우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누14272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두5773 판결 등 참조). 또한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8-11

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고, 또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 상호 간에도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라고 하여 그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않고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경우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면, 이로써 납세고지서의 흠결이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아야 하지만, 이와 같이 납세고지서의 하자를 사전에 보완할 수 있는 서면은 법령 등에 의하여 납세고지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 납세고지서와 일체를 이룰 수 있는 것에 한정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두550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5. 6. 10.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납세고지서에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의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을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고 각 본세와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가 2015. 6. 10. 원고에게 송부한 납세고지서 뒷면에 세액산출 근거로 지방세법 제10조, 제11조,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등이 기재되어 있고, 주택의 면적에 따른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의 세율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납세고지서 뒷면에 자진신고납부 불이행 또는 과소신고납부에 따른 가산세의 근거규정으로 지방세법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8-11

제21조 및 그에 따른 세율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납세고지서에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의 공통된 과세표준으로 380,000,000원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납세고지서에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취하여지는 조치 또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2015. 6. 10. 원고에게 위 납세고지서를 송부하면서 '세액 산출내역'을 함께 송부하였는데, 위 '세액 산출내역'에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각각의 본세와 가산세의 세액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으며, 가산세의 산출근거와 본세와 가산세 각각에 적용되는 세율 등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2015. 6. 10. 원고에게 송부한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의 세액이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지 않기는 하나 위 납세고지서 앞·뒷면에 그 밖에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5호, 제55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6조 제1호, 제2호 본문에서 정한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위 납세고지서와 함께 송부된 '세액 산출내역'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을 함에 있어 어떠한 지장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납세고지서에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 중 일부가 누락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납세고지서와 함께 송부된 '세액 산출내역'의 통지에 의하여 그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8-11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방승만

판사 김민경

판사 윤민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8-11

(별지)

관계 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납세고지서"란 납세자가 납부할 지방세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 세율, 세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취하여지는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55조(납세의 고지)

① 지방세를 징수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그 지방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고지하여야 한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6조(납세의 고지)

법 제55조에 따른 납세의 고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로 하여야 한다.

1.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연도와 세목·세액·납부기한
2. 세액의 산출근거와 납부장소. 다만, 하나의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로 둘 이상의 과세대상을 동시에 고지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산출근거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자가 세액 산출근거의 열람을 신청하는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지체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